

분류 기수	법무 02124-62	기 안 총 지	시 행 상
문서번호		(전화: 713-1156)	특별히 표
보증기간	임 6·6월 10. 5. 3. 1.	시	장
수 선 처 보증기간	경 구		
시행일자	1990. 1. 1.		
보	부서 장	한	결재
조	기획 관리	결	통 계
기	실	조	2월
제	법무 담당관	수	1990. 1. 20.
기안 책임	법제과장	69/호	
경	수	90. 1/20	
수	성		
한	총		
서울특별시공무원고용공무원고용과 경무과 1990. 1. 20. 제 39호			

(제 1항)

수 청 과정 첨부

수 청: 갈은 건

서울특별시공무원고용공무원고용과 1990. 1. 20. 제 39호

서울특별시 법제과무처리규칙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과 같이 시

보에 개체 발행하고자 합니다.

첨부: 부록 1부

(제 2항)

수 청: 공보문

1990-25(2)-09-03
85-9-9-23

3417

1990-25(2)-09-03-09-03
1-20-31-1990-1-20

제 목: 시보 기재

(결재)

1. 별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응답규정증 개정규정을

시보에 기재 발령할 것.

첨 부: 서울특별시 훈령 제 69/ 호 1부. 증.

(제 3-안)

수 신: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

제 목: 훈령 발령

교육01141-39

(90. 1. 18)

2.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응답규정증 개정규정을

시보에 기재 발령하였으나 시행에 착오 있도록 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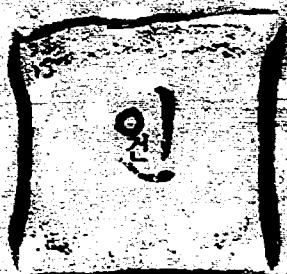
첨 부: 서울특별시 훈령 제 69/ 호 1부. 증.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 증개정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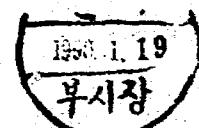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1월 20일

서울특별시장 고



3419



서울특별시 훈령 제69/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"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위로 3인에게 수여한다." 를 "직급별 기본교육
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이고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성적우수
자와 우수분임에게 수여한다."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 3 조 제목중 "사상시키 및 시상금 등"을 "시상시키 및 시상방법"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
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3항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.

1.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은 30만원
2.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50만원
3. 간부양성과정 등 3개월 이상인 장기과정은 100만원

제 4 조 제1항 중 "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" 을 "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
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원"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"시상금의 집행"을 "시상의집행"으로 "시상금의지급총액"
을 "지급총액"으로 한다.

제 7 조 제2항 제2호 중 "시상금지급금액"을 "시상금액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.